제3048호
2023. 12. 1.

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
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주 재 봉
전화 : 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람	기관의장

구 보

◉ 자치법규
[입법예고]
제2023-1078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2

◉ 고 시
제2023-72호 :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(신당동 123-1일대 외 1개소(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) ····· 8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◉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
서울특별시중구

자 치 법 규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1078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2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이용객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(제3조)

❍ 공중화장실 등 설치·관리자의 책무에 '안전한 사용환경 조성' 책무 추가(제4조)

❍ 제5조2항 신설규정 추가로 조례 구성상 현행 제5조를 제5조1항으로 조문번호 변경 및 중복된 내용의 제5조6호 삭제(제5조)

❍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지정여부 및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종류 및 설치 댓수가 관리되도록 반영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장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, 전화 : 02-3396-5472, 팩스 : 02-3396-8756, email : smii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http://www.junggu.seoul.kr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붙임 1.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""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· 제7호 · 제10호에 따른 관광지 ·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 · 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"이란"을 ""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"이라 함은"으로 하고, "제50조제1항 및 제3항"을 "제52조제1항 및 제3항"으로 하며, "제52조제1항"을 "제54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"를 "유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"로 한다.

제5조제6호를 삭제하고, 제5조 각호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적용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공중화장실 관리카드

전 경 사 진															
소 재 지								화장실 명칭							
지역구분				설치 년도				관리책임 공무원	소 속						
설치 및 관리주체	설치주체								직 급						
	관리주체								성 명						
관 리 인	(전화번호 :)							월평균 이용인원							
규 모	부지 (㎡)	화장실 면적 (㎡)	대변기 수			소변기 수		대변기유형		사용료					
			남	여	장애인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유료	무료				
편의시설 내역	세면 시설	난방 시설	냉방 시설	환풍기	화장지 (자 동 판매기)	비누	수건 (에어 타올)	탈취제 (방향제)	청소도구함		기타				
									내부	외부					
시설관리 내역	연월일	관리 사항	금 액 (천원)	연월일	관리 사항	금 액 (천원)	연월일	관리 사항	금 액 (천원)						
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	지정 여부	비상벨 (설치수)		CCTV (설치수)								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① (생 략)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"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"이란「관광진흥법」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·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"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"이라 함은 ---------- 제52조제1항 및 제3항----------제54조제1항----------
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----------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5조(설치기준)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5. (생 략) 6.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(신 설)	제5조(설치기준)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5. (현행과 같음) 6. <삭 제>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

	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적용한다.

고 시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72호

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(신당동 123-1일대 외 1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)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제한지역

연번	위 치	면적(㎡)	비고
1	신당동 123-1번지 일원	34,559.7	신당동 123-1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
2	신당동 741번지 일원	13,482.3	신당동 741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

2. 제한근거 및 사유

가. 제한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

나. 제한사유 :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 방지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함

3. 행위제한 내용

가. 건축물의 건축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「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나. 토지분할

다.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※ 제한 적용 예외

-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·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-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4. 제한기간 : 2023. 10. 26.부터 3년

5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(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)

ㅁ 붙임 : 행위제한 지형도면

○ 신당동 123-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정비사업 방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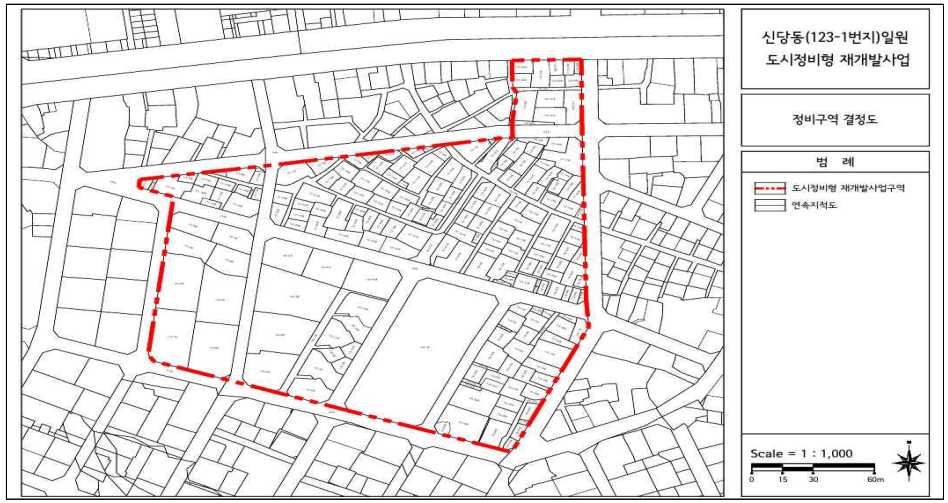

○ 신당동 74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정비사업 방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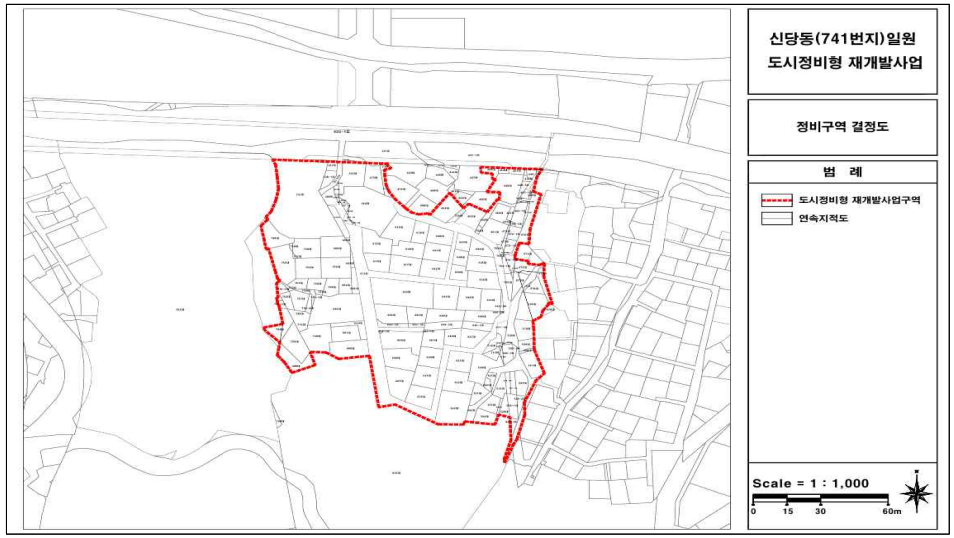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